

청평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신규대조표(2022.12.13.개정)

항목	현행규정	개정안
제10조 【운영】	<p>제10조 【운영】</p> <p>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</p>	<p>제10조 【운영】</p> <p>① _____</p> <p>② _____</p> <p>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.(신설)</p>
제18조 【사안설명】	<p>제18조 【사안설명】</p> <p>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</p> <p>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,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.</p> <p>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</p>	<p>제18조 【사안설명】</p> <p>① _____</p> <p>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(일시, 장소, 개최이유),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.</p> <p>③ _____</p> <p>④ _____</p>
제29조 【기타 교내생활】	<p>제29조 【기타 교내생활】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</p> <p>2. 방과후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</p> <p>3.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</p>	<p>제29조 【기타 교내생활】</p> <p>① _____</p> <p>② 학생은 흡연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흡연의 해로움을 알고 금연을 실천한다.(신설)</p>